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및 운영 안내

2021. 3. 9(화) 수원상공회의소





# 목 차

- I. 청년공제[청년]가입자격
- II. 청년공제[기업]가입자격
- III. 청년공제 참여
- IV. 별 첨



## I.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 1.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 1-1. 기본 가입자격

###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를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정규직채용자 급여 및 수습운영 기본조건]

#### 1) 급여수준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

#### 2) 자체 수습기간 운영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수습 시작일)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 2020년 : 최저임금(1,795,310원)이상 이거나 월 고정임금 총액1,822,480원 단, 1,822,480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산입항목 합산 최저임금 90%(1,615,779원)초과 시 가입 가능

- 2021년 : 최저임금(1,822,480원)이상

단,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 가입 허용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

단,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거나 변동 및 실비변상금액은 제외

\*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예시1) 수습기간 최저임금 산출

구분	수습	종료 후
기본급	1,650,000원	1,727,154원
직무수당	50,000원	50,000원
식대	100,000원	100,000원
시간외수당	200,000원	200,000원
합계	2,000,000원	2,077,154원

구분	2020년	2021년
총급여	2,000,000원	2,077,154원
최저임금	1,710,235원	1,745,326원
자격여부	자격미달	자격적격

[수습기간 자격여부 산출 기준]

- 2020년 기본급, 직무수당100% / 식대89,765원 제외 / 시간외 제외

- 2021년 기본급, 직무수당100% / 식대포함100% / 시간외 포함100%



# 1.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한다.  
(실직기간은 ①~⑥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와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 1.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 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고용보험 이력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센터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 감독부서\*에 확인\*\*

\* 고용노동지청 감독부서의 직접조사는 사업경영담당자에 의한 괴롭힘인 경우에 실시 중

\*\* 사업장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조치가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조사결과 및 후속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

\* 괴롭힘 사실 있음→인정, 괴롭힘 사실 없음→불인정

\*\* 단,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6개월 이내 재취업 한 경우 '청약신청'까지 진행은 하되 조사결과에 따라 청약승낙 여부 처리



# 1.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⑥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될 수 있음.

⑨ 인력공급업(\*75121, 7512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74100)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업종코드)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1.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 없이 가입 가능
  - \*\*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1-1. 기본 가입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음
-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개월 적용



### 관련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
-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1.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 예시4) 동일기업, 관련기업에 대한 재취업 금지.허용 여부

[동일기업(사업주), 관련기업(사업주)에 재취업하는 경우]

신규가입 요건		동일기업(사업주)에 재취업 시	관련기업(사업주)에 재취업 시
고보 12개월 이하자 중	정규직, 3개월 초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u>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u>	"가입 가능"
	3개월 이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가입 가능"	"가입 가능"
고보 12개월 초과자 중	정규직, 3개월 초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u>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u>	<u>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u>
	3개월 이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u>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u>	<u>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u>

재가입 요건	동일기업(사업주)에 재취업 시	관련기업(사업주)에 재취업 시
고보 12개월 이하자가	"가입 불가"	"가입 가능"
고보 12개월 초과자가	"가입 불가"	"가입 가능"

단, 재가입 요건은 재가입이 가능한 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 가능(P28 참조)

[참고사항]사업연계가 가능한 경우  
 1) 본지점 전근  
 2) 포괄양도양수(단,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최종판단)



# 1.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

##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 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 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참 고

(위 ⑧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은 중복지원 가능



# 1.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위 1-3. ⑤ 해당자 중(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 I.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20년 사업 : 6개월, '21년 사업 : 1년

###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연령)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 (청년공제 가입)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참 고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훈련

구 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
기 간	1.5년 ~ 2년	1년	3.5년	1년
운 영	특성화고	전문대학	고교-전문대	4년제 대학
선발대상	특성화고 고교 1, 2 학년 재학생	전문대학 2학년 재 학생	고교 2학년	4년제 대학 4학년 재 학생
근로계약 체결시기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또는 4 학년 2학기

\*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아우스빌동) 사업도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에 해당됨



# I. 청년공제 [청년]가입자격

##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 (연령)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계약학과\* 관련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 재교육형 중 동시채용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해당  
(2년 의무복무)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해당 (1년 의무복무)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 (연령)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기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참여 중 포함)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이력 및 실직기간 산정)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



## II. 청년공제 [기업]가입자격





# II. 청년공제 [기업]가입자격

##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참고

#### 중견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준과 확인방법

매출액은 기업의 결산일 기준 개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3개년의 평균 매출액으로 확인 가능하며, 결산일은 '중견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보면 알 수 있음

\* (예시1) '19.10.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9.04.01.~'20.03.31. 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8.12.31.임

→ 따라서, '18~'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예시2) '20.3.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9.04.01.~'20.03.31. 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8.12.31.임

→ 따라서, '18~'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예시3) '20.05.0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04.01.~'21.03.31. 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9.12월임

→ 따라서 '19~'17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참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결산월 기준 3개월 이후부터 1년간이며, 확인서는 유효기간 이내에만 발급 가능

(예시) '18. 12. 31. 결산 → 유효기간 '19. 04. 01. ~ '20. 03. 31.

'19. 03. 31. 결산 → 유효기간 '19. 07. 01. ~ '20. 06. 30.

'19. 06. 30. 결산 → 유효기간 '19. 10. 01. ~ '20. 09. 30.



## II. 청년공제 [기업]가입자격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업종에 한정)
-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업종에 한정)
-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 II. 청년공제 [기업]가입자격

##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 참고

####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 iii)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운영업 등)

-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II. 청년공제 [기업]가입자격

### 2-3. 가입 제한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에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 II. 청년공제 [기업]가입자격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21년 기준: '18~'19년 / '22년 기준: '19~'20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승인) 후 공제계약 유지율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참 고

'19.1.1.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 제 26조의 2(지원의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20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 법 제26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II. 청년공제 [기업]가입자격

-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⑫ 전년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22년부터 가입 제한)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





### III. 청년공제 참여



#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1	<p><b>기업.청년 사업참여신청</b> (고용노동부청년공제) <a href="http://www.work.go.kr/youngtomorrow">www.work.go.kr/youngtomorrow</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관 선택 : 수원상공회의소</li> <li>-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기업.청년 순서 필요 없음)</li> </ul>	
2	<p><b>수원상공회의소 온라인 심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청년 적격심사 및 매칭(통상 10명업일)</li> <li>- 기업서류 발송(기업담당자 E-mail)</li> </ul>	
3	<p><b>기업서류 준비 및 제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 10개 +<math>\alpha</math> / 청년 : 4개 +<math>\alpha</math></li> </ul>	
4	<p><b>수원상공회의소 서류심사 및 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확인 적격심사(보완요청)</li> <li>- 적격자 선발 ( 다음날 청약 신청가능)</li> </ul>	
5	<p><b>기업/청년 청약신청</b> (중소벤처진흥공단) <a href="http://www.sbcplan.or.kr">www.sbcplan.or.kr</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청년 순서로 청약 가입</li> </ul>	
6	<p><b>지원금 신청서 제출(2년:5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상공회의소 : 시기별 안내(신청서 작성대행)</li> <li>- 기업 : 확인 후 서류제출</li> </ul>	

## 2. 청년공제 적립구조

### <청년공제 적립구조>



### 1. 공제부금 납입(적립)

#### 1-1. 청년

- 가.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나.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다.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라.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1-2 기업 및 정부

- 가.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나. 납입(적립) 시기 및 금액 : 24개월(2년)간 5회 지원금 신청

적립 주기	1차	2차	3차	4차	5차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50만원 (50만원)	60만원 (110만원)	60만원 (170만원)	60만원 (230만원)	70만원 (300만원)
정부지원(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 기업납입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실제 기업비용 없음

다. 적립방법 :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로 지급(적립)







# 4. 청년공제 청약철회.취소.중지

## 1. 청약철회

청약 철회라 함은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가입자격미달 예시]

- 월 급여총액 350만원(연봉42,00만원)초과의 경우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1년간 유지조건)
- 청약가입 후 사실과 다른 가입자격 미달 조건이 확인 된 경우

## 2. 계약취소

계약 취소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 계약취소 신청기간]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취소 신청

## 3. 납입중지(납부유예)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됨

### [ 납입중지 기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 (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 \*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 4. 청약철회.계약취소.납입중지

## [납입유예 사유 및 기간]

사 유	납부유예기간
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3.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해당기간
1.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2.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주 30시간 미만 근무시간 단축 포함) 3. 개인질병 4.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12개월까지
1. 업무상 재해	24개월까지

- 코로나19관련 회사귀책 휴직.휴업의 납부유예기간연장  
 납입중지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중도해지 하여야 하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해당기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공제 유지  
 → 단, 최대 연장시점(만료시점)은 '21.12.31.

## [납입유예 신청]

- (www.sbcplan.or.kr)에서 기업 또는 청년(핵심인력)신청  
 단, 휴업.휴직이 연속적이지 않고 6개월 내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중진공)으로 대리 신청 가능





## 5. 중도해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중도해지 사유]

####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 전환되어도 청년공제 자격을 유지시키고, 임금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 [중도해지 신청]

- (www.sbcplan.or.kr)에서 기업과 청년(핵심인력)이 함께 신청  
단, 해지사유가 기업과 청년이 동일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 5. 중도해지

## [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

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 (환급금 정산 기준일)
<b>&lt;기업귀책 사유&gt;</b>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등
휴업, 휴직	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 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 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만기일 전일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대기업분류일 등의 전일
<b>&lt;청년귀책 사유&gt;</b>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6회차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 날)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b>&lt;기타&gt;</b>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사망일,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일



# 5. 중도해지

## [ 중도해지 환급금 ]

지급기준 : 가입기간까지의 (청년)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정부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 지급함

o 참여연도 : 2018년 2019년 [단위:천원]

청약승인 일로부터 근무기간		1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4월미만	24월이상 ~30월미만	30월이상 ~36월미만
정부 지원	3년	0	975	1,650	2,400	3,375	4,350
	2년	0	1,125	2,250	3,375	-	-
기업지원		전액환수					
자기부담		납부누계액 및 이자					

o 참여연도 : 2020년 [단위:천원]

청약승인 일로부터 근무기간		1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4월미만	24월이상 ~30월미만	30월이상 ~36월미만
정부 지원	3년	0	0	1,650	2,400	3,375	4,350
	2년	0	0	2,250	3,375	-	-
기업지원		전액환수					
자기부담		납부누계액 및 이자					

o 참여연도 : 2021년 [단위:천원]

청약승인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4월미만
정부 지원	청년귀책	0	0	1,600	2,300
	기업귀책	200	500		
기업지원		전액환수			
자기부담		납부누계액 및 이자			

**\*참고사항\***

현 상 : 2년(3년)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처리  
\* 사업주 귀책사유로 마지막 회차 미적립 상태에서 청년이 환급금을 희망  
환급기준 : 자기부담금 + 정부지원금만 수령 / 기업지원금은 전액 국가로 환수





# 6. 재가입

##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 1)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 <참고>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세부 요건

##### ○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 실시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입 허용

- ①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 ② 부분 혹은 전일 휴업·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임금체불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 ○ 고용보험료 체납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 ○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 3) 기타 지방 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 ○(추가지침)

- '20.7월 ~12월중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6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 재취업기간 연장(20.4.23.자 코로나19지침의 최대 연장시점을 '20.12월말로 한정한 조건을 해제)  
(예) <종전>'20.8.10→'20.12.31.⇒ <변경>'21.2.9.까지로 연장
- '21.1월 ~6월중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6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 재취업기간 연장



## 7. 공제금 만기

가.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기업기여금 300만원+정부지원금 600만원  
→ 총 1,200만원 및 이자

라. (지급 신청) 기준 및 절차

청년) 자기부담금 적립완료(24회차)



기업) 마지막회차(5회차)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 제출  
(만기달 급여수령 후 신청서 제출)



운영기관) 지원금 검토 후 고용센터로 제출(지정 제출일에 일괄제출)



고용센터) 지원금 검토 후 지원금 적립



증진공) 지원금 적립 후(매주월요일) 청년에게 만기금 신청 문자 발송

마. (만기신청)

(www.sbcplan.or.kr)에서 청년(핵심인력)이 신청  
만기공제금은 접수일로 부터 7 영업일 이내 입금

### [참고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5년형) 연계가입가능  
○ 기 간 : 정부지원금 마지막 적립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8.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 (자동적립 포함) 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청년공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해당-

- ▶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부정수급 판단기준]

가. (실시기업) ① 청년공제 가입 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②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③ 임금을 부풀려 기업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나. (청년)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청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9. 현장지도점검.만족도 조사

## [현장지도점검]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근무 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실시기업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① 5인 미만 사업장,
- ②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근무 사업장
- ③ 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 ④ 협약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성립일이 1년 미만 기업
- ⑤ 특수고용형태 이력이 있는 청년이 근무하는 기업
- ⑥ 근로자 파견업체 및 용역업체
- ⑦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 지도점검시 임금체불 등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만족도 조사]

- 조사시기 : 청년공제 청약승인일 이후
- 조사대상 : 참여기업, 청년(핵심인력) 모두
- 조사방법 :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http://www.work.go.kr/youngtomorrow)

로그인(기업.청년)→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 → 만족도조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구인정보 구직정보 알림마당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기업회원서비스

- 회사정보관리
- 구인신청안내
- 구인신청관리
- 참여기업관리
- **만족도조사**
- 기업 지원금 조회

만족도 조사

▶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 > 만족도 조사

- 목록에서 조사기간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에서 만족도조사를 작성합니다.
- 목록에 '참여이력 중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의 협약가입건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올시, 참여자의 협약상태를 확인하세요.

사업년도	조사기간	등록상태
2021	2021-01-01 ~ 2021-12-31	이동중
2020	2020-01-01 ~ 2020-12-31	등록완료



### III. 별 첨

- 중복지원 가능/불가 사업
- 5인미만 참여가능 업종 코드



# IV. 별 첨

## [중복지원 가능 사업 / 중복지원 불가 사업]

### 중복지원 가능

기 업	청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추가고용장려금</li> <li>일자리안정자금</li> <li>두루누리</li> <li>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li> <li>중소기업 기술개발(R&amp;D)지원사업</li> <li>직접일자리사업 중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예)수원형청년내일채움공제</li> <li>뉴딜일자리민간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서울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지자체) - 복지포인트, 면접수당, 교통비, 기본소득</li> <li>근로장려금</li> <li>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단, 성공금 기간 중복시 불가)</li> <li>고교취업연계장려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단,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li> <li>유사 자산형성사업 (단, 2018년 이전에 참여하여 종료)</li> </ul>

### 중복지원 불가

기 업	청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창출 장려금 -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 고용촉진장려금</li> <li>고용안정 장려금 - 정규직 전환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등)</li> <li>-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li> <li>-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li> </ul> <p>*참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0조)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 고용촉진장려금            (3)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5) 직장어린이집운영비용 지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한 자산형성사업 (단, 2018년 이후에 참여)</li> <li>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단,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li> </ul>



# IV. 별첨 (5인 미만 참여가능 업종코드)

## ○ 지식서비스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자)	해당업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IV. 별첨 (5인 미만 참여가능 업종코드)

## ○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당업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감사합니다.**